

## 1 개념 및 필요성

-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서 및 결산서를 기준으로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
  -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
  -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통제 기반을 확립하여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용 유도

## 2 제도 도입 추진경과

- '94년부터 「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」 운영
  - 자치단체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, 매 회계연도 마다 1회 이상 세입·세출예산의 집행상황,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등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 (구.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)
  - 자치단체별로 공개범위, 공개방법, 공개시기 등이 서로 상이하여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및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 등이 어렵다는 한계
- '06년부터 「지방재정 공시제도」 도입
  - 재정공시 대상, 공시방법, 시기,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규정(현행 지방재정법 제60조)
  - 기존 「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」의 한계를 극복하고, 주민에 대한 재정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효과

### ■ 자치단체 유형 변경

- 2021(2020회계연도)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의 자치단체 유형으로 현행화

### ■ 결산기준 재정공시 서식 변경 및 기준 개선

-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(5-8) 대상회계에 기타특별회계 포함
- 지방세 지출현황(6-2) 세목별 비과세·감면 현황 목록 수정
- 기금 성과분석 결과(9-3) 및 재정분석 결과(9-4) 지표 항목 및 순서 등 변경
-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(9-10) 공개대상 시설물 기준 및 공개 서식 수정
-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(9-13.)의 자치단체 유형별 목표 변경
  - 2021년도 6월말까지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**60%**  
 ※ 특·광역시 **64.0%**, 기초(세종, 제포 포함) **55.1%**, 공기업 **56.0%**로 변경

### ■ 예산기준 재정공시 서식 변경 및 기준 개선

-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개정사항 반영
  -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-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(4-11) 산정시 공무원직(무기계약) 포함, 대상회계에 기타특별회계(소방공무원 포함) 추가
- 지방보조금 편성현황(4-10.) 서식 변경
  - 총액 한도액 산정 제외 사항(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, 국제행사 및 전국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)에 대해서는 한도 외 예산편성액에서도 제외하도록 서식 변경
-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(5-1, 5-2) 반영항목 및 순서 변경

**(참고) 2022년도(2021회계연도) 결산기준 재정공시 항목**

자치단체 재정공시(59개)		행정안전부 통합공시(36개)	
분류	세부항목	분류	세부항목
결산규모 (4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세입결산 • 세출결산</li> <li>• 기금운영현황 • 지역통합재정통계</li> </ul>	결산규모 (4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세입결산 • 세출결산</li> <li>• 기금현재액 • 지역통합재정통계</li> </ul>
재정여건 (3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재정자립도[결산] • 재정자주도[결산]</li> <li>• 통합재정수지[결산]</li> </ul>	재정여건 (3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재정자립도[결산] • 재정자주도[결산]</li> <li>• 통합재정수지비율[결산]</li> </ul>
부채/채무/ 채권 (1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통합부채 현황 • 지자체 부채 현황</li> <li>•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</li> <li>• 출자·출연기관 부채 현황</li> <li>• 우발부채 현황 • 지자체 채무 현황</li> <li>•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</li> <li>• 일시차입금 현황</li> <li>•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</li> <li>• 재정건전성관리 계획·이행현황</li> <li>• 보증채무 현황 • 채권 현황</li> </ul>	부채/채무/ 채권 (7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예산대비채무비율</li> <li>• 지자체부채비율</li> <li>• 지방공기업부채비율</li> <li>• 출자·출연기관 부채현황</li> <li>• 민자사업재정부담액</li> <li>• 보증채무 비율</li> <li>• 채권현황</li> </ul>
주요예산 집행결과 (1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본경비 집행현황</li> <li>•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</li> <li>•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</li> <li>• 업무추진비 집행현황</li> <li>• 국외여비 집행현황</li> <li>•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</li> <li>•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</li> <li>•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</li> <li>• 연말지출 비율</li> <li>•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</li> </ul>	주요예산 집행결과 (7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무원인건비비율</li> <li>• 업무추진비비율</li> <li>• 지방의회경비비율</li> <li>• 지방의회 국외여비 비율</li> <li>•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비율</li> <li>• 연말지출비율</li> <li>• 기본경비비율</li> </ul>
지방세/ 세외수입 (3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방세 징수 실적 • 지방세 지출현황</li> <li>•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</li> </ul>	지방세/ 세외수입 (3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방세 징수 실적 • 지방세 지출현황</li> <li>•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 현황</li> </ul>
복지/ 민간지원 (6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회복지비 •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</li> <li>•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</li> <li>•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</li> <li>•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주요 처분내용</li> <li>• 행사 • 축제경비</li> </ul>	복지/ 민간지원 (3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회복지비비율</li> <li>• 지방보조금비율</li> <li>• 행사·축제경비비율</li> </ul>
재산및물품/ 지방공공기관 (4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유재산 및 물품</li> <li>• 출자·출연금 집행현황</li> <li>• 출자·출연기관현황</li> <li>• 지방공기업 현황</li> </ul>	재산및물품/ 지방공공기관 (2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출자·출연금비율</li> <li>• 공유재산 및 물품현재액</li> </ul>
재정성과/ 평가 (14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성과보고서 • 복식부기 재무제표</li> <li>• 기금성과분석결과 • 재정분석 결과</li> <li>• 재정건전화 계획 및 이행현황</li> <li>• 성인지 결산현황</li> <li>• 행사·축제 원가회계 정보</li> <li>•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</li> <li>• 수의계약 현황</li> <li>•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</li> <li>•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·처리현황</li> <li>•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</li> <li>• 신속집행 실적 • 감사결과</li> </ul>	재정성과/ 평가 (7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성인지 결산현황</li> <li>•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</li> <li>•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</li> <li>• 복식부기 재무현황</li> <li>• 수의계약비율</li> <li>•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</li> <li>• 신속집행 실적</li> </ul>
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 (3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투융자심사 대상사업</li> <li>• 지방채 발행사업 • 민간투자사업</li> </ul>		
특수공시 (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특수재정 상황 및 사업 등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심의·선정(5건 이상)</li> </ul>		

**(참고) 2023년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항목**

자치단체 재정공시(21개)		행정안전부 통합공시(19개)	
분류	세부항목	분류	세부항목
예산규모 (3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세입예산</li> <li>• 세출예산</li> <li>• 지역통합재정통계</li> </ul>	예산규모 (3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세입예산</li> <li>• 세출예산</li> <li>• 지역통합재정통계</li> </ul>
재정여건 (3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재정자립도[당초예산]</li> <li>• 재정자주도[당초예산]</li> <li>• 통합재정수지[당초예산]</li> </ul>	재정여건 (3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재정자립도[당초예산]</li> <li>• 재정자주도[당초예산]</li> <li>• 통합재정수지[당초예산]</li> </ul>
재정운동 계획 (1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중기지방재정계획</li> <li>• 성인지예산</li> <li>•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</li> <li>• 성과계획서</li> <li>• 재정운용상황개요서</li> <li>• 국외여비 편성현황</li> <li>• 행사·축제경비 편성현황</li> <li>•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단체장·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</li> <li>- 시책추진업무추진비</li> </ul> </li> <li>•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</li> <li>• 지방보조금 편성현황</li> <li>•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</li> <li>- 공무원 일·숙직비</li> <li>- 통장·이장·반장 활동보상금</li> </ul> </li> </ul>	재정운동 계획 (9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중기지방재정계획</li> <li>• 성인지예산 비율</li> <li>• 재정운용상황개요</li> <li>• 국외여비 편성현황</li> <li>• 행사·축제경비 편성현황</li> <li>•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단체장·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</li> <li>- 시책추진업무추진비</li> </ul> </li> <li>•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</li> <li>• 지방보조금 편성현황</li> <li>• 1인당 경비 편성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</li> <li>- 공무원 일·숙직비</li> <li>- 통장·이장·반장 활동보상금</li> </ul> </li> </ul>
재정운동 성과 (4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(세출효율화)</li> <li>•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(세입확충)</li> <li>•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</li> <li>•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</li> </ul>	재정운동 성과 (4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(세출효율화)</li> <li>•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(세입확충)</li> <li>•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</li> <li>•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</li> </ul>

## 1 공시주체 :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

## 2 공시의 구분 :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

- 공통공시 :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 공시
  - 예산공시 4개 분류 21개 세부항목, 결산공시 9개 분류 59개 세부항목

### ● 공통공시의 범위

#### →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결과(지방재정법 제60조)

- 세입·세출예산의 운용상황(성과계획서, 성과보고서 포함)
- 재무제표
- 채권관리 현황
- 기금운용 현황
-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
- 지역통합재정통계
-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경영정보
- 중기지방재정계획
- 제36조의2 및 「지방회계법」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
-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
-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
- 제55조 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
-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
- 투자심사사업, 지방채 발행사업, 민간자본 유치사업, 보증채무사업의 현황
- 지방보조금 관련 현황(교부현황, 성과평가 결과 등)

#### → 그밖에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(시행령 제68조)

- 지방재정분석·진단의 결과
-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
-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- 특수공시 :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
-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

●● 특수공시의 대상

→ 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

- 공시대상 건수 대비 2~3배수 정도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

→ 대상사업 선정기준

- 전년도 업무계획에 의거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사업
  - ※ 단체장 지적홍보를 위한 사업, 계획중인 사업은 배제
- 주민 관심도 제고, 공시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전체 주민에게 수혜가 있는 사업
- 타 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고유사업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  
(특수공시사항 예시 참조)
- ※ 공시건수, 후보건수 선정 등은 탄력적으로 운영

**특수공시사항 예시**

- 노인치매병원 유치 등 핵심 지역숙원사업 또는 특수 지역 유치사업의 재원확보 및 집행상태 등 추진실적
- 상습 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역 재정지원결과 전년대비 피해축소 등 재난 및 안전 관련 주민관심사항
- BIO 산업단지 유치관련 재원확보 및 분양실적 등 지역전략산업추진 상황
- 지역 특수주거여건인 달동네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저소득층 생활개선 관련 주민관심사항
-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투자 등 기타 당면 주요 지역 현안사업 추진실적 등

### 3 공시의 시기 및 작성 :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운영

- 정기공시 :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(지방재정법 제60조 제1항)
- 수시공시 :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공시 시점에 작성되지 않은 항목을 작성이 가능해진 시점에 추가 공시
- 작성방법 : 공시편람을 준수하되,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항목별 세부사항을 업무담당자가 자율적으로 작성

### 4 공시방법

- 지역사회 주민들의 접근성, 편의성, 시청률, 구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
-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, 당해 지역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지, 지역방송, 시·군정지(반상회보) 등
  -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시
  - 지역실정에 적합한 시·군정지 등 공시수단 추가 활용
    - 주민접촉이 많은 주민자치센터, 보건소 등에 관련 공시자료가 포함된 시·군정지(반상회보)를 비치
    - 시책홍보를 위한 주민간담회, 정책토론회 등에서 필요시 홍보용 책자 활용 등
- 최소한 1년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재정공시를 유지
  - ※ 차년도 재정공시 이전까지 당해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시되어야 하며,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한 재정공시 자료도 최소 1년 이상 보관
  - ※ 1년이 경과한 재정공시 자료에 대해서도 홈페이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시 자료로서 관리

## 5 재정공시 내용에 포함해서는 안되는 사항

### ■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가 있는 사항

- △△경로당에 노래방 기기를 구입·보급
- △△사회복지시설 운영비를 지원

### ■ 정치적 공약, 국익을 저해하는 사항 등

- 원전폐기물 수거시설을 우리지역에 유치
- △△지역 도로개발사업을 원천적으로 반대
- △△정부정책에 원천적으로 반대

### ■ 국가기밀 또는 의사결정·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

- 현재 사업계획 상태에 있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

### ■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

- 다른 법률이 정하는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
-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



### ■ 법적근거

- 지방재정법 제60조(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)제3항
- 자치단체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

### ■ 위원회의 구성

-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호선
-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 초과 불가
  - 민간위원 :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
  - 공무원 :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
- 기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

### ■ 위원회의 기능

- 재정공시제도 운영 관련 공시방법, 공시내용 등에 대한 심의
- 특수공시사항 선정방법, 절차 등 준수여부에 대한 심의
- 기타 자치단체 조례에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

### ■ 재정공시 결과 보고서 제출

- 재정공시 후 5일 이내에 공시내용, 공시일시, 공시방법, 위원회 운영실적 등 재정공시 결과를 지방의회와 행정안전부에 보고
- 행정안전부 보고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문서보고(공문시달), 지방의회 보고는 이를 참조하여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게 운용

### ■ 불성실 재정공시 자치단체에 대한 조치

- 자치단체별 재정공시 결과가 미흡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,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자치단체에 다시 공시하도록 권고 (지방재정법 제60조의2)
- 재공시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 행정안전부가 직접 공시 (지방재정법 제60조의2)

### ■ 행정안전부 통합공시

- 자치단체별 공시 결과를 종합,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(지방재정통합 공개시스템)에 항목별·자치단체별 비교하여 통합공시
- 수요자 관점에서 통합공시 항목 비교가 가능토록 분류체계 마련 및 통합공시 화면 재구성